2013년도 제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 1. 일 자 2013년 4월 25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총재)

임 승 태 위 원

박 원 식 위 원(부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김 준 일 부총재보 강 태 수 부총재보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태 석 공보실장 서 영 경 금융시장부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21호 — 금융안정보고서(2013년 4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3년 4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작성과 보완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 등에 서 논의된 주요 논의 및 보완·수정 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금융안정보고서의 책임성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 이의 일환으로 '금융안정 이슈 분석' 부분을 신설하여 금융안정 이슈관련 심충분 석을 강화하는 등 보고서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종전과 같이 거시건전성협의회가 원고작성 전반을 조율한 가운데 유관부서가 집필에 공동 참여하였음.

보고서 작성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음.

2장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의 1절 '가계'에서는 신용양극화로 인한 저신용자 등 저소득층의 부실위험 증대, 다중채무자 부채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 를, 2절 '기업'에서는 조선·건설·해운 업종 기업의 부실 우려, 영세 중소기업 자금 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3장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의 1절 '은행'에 서는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증가 문제를 잠재위험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2절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신 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상황과 잠재위험 요인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음. 한편 '금융안정 이슈 분석'에서는 금융시스템 연계성과 국내은 행의 대기업 익스포저(exposure) 현황 및 잠재위험을 심층 분석하였음.

아울러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 이슈 분석'의 '금융시스템 연계성 분석'에서 모형에 의한 분석 외에 금융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보고서 체계 개편에 따라 대외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설명이 약화되었는데, 우리 경제가 대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유로지역 리스크 완화,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증 대 등 최근의 변화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의 재무건전성 평가시 가계의 부채 측면에 너무 치 우쳐 있다고 지적한 후, 가계소득 측면에 대해서도 충실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보고서를 더 명료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 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3년 4월)(안)(생략)

<의안 제22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3호 및 제64조에 의거 금융기관 별 총액한도 지원대상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실적을 제외하고 기술형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실적을 포함하기 위해「한 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